

제 494 호

1975. 4. 7.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  
면 집 : 문화공보실장 조 용 하  
전화 75-7834

인 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 시 보

차 례

◎ 조 례

제 938 호 : 서울특별시영동계 2 지구 ( 추가 ) 토지구획  
정리부담금부과징수조례 ..... 3

제 939 호 : 서울특별시영동계 2 지구 ( 추가 ) 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조례 ..... 4

제 940 호 : 서울특별시공무원취무발명보상조례 ..... 8

◎ 규 칙

제 1459 호 :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취무발명보상조례  
시행규칙 ..... 14

◎ 고 시

제 39 호 : 사료성분등록고시 ..... 21

제 40 호 : 도시계획시설 ( 시장 ) 결정 및 지적승인 ..... 22

제 41 호 : 도시계획시설 ( 시장 ) 결정 및 지적승인 ..... 22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서울특별시

제 43 호 : 도시 계획 사업 ( 학교 ) 시행 허가	23
제 44 호 : 비료 판매 영업 등록 고시	24
◎ 공 고	
제 75 호 : 도시 계획 사업 ( 학교 종합 시설 ) 완료 공고	24
제 76 호 : 환지 예정지 변경 지정 공고	
제 79 호 : 도시 계획 시설 ( 도로 ) 실시 계획 공람 공고	25
◎ 사 령	26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영동제 2 지구 ( 추가 ) 토지구획정리부담금 부과징수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 승 인

1975 년 4 월 7 일

◎ 서울특별시조례제 938 호

서울특별시영동제 2 지구 ( 추가 ) 토지구획정리부담금 부과징수조례

제 1 조 ( 목적 ) 이 조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 75 조 및 동법시행령제 36 조와 서울특별시 영동제 2 지구 ( 추가 )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제 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 ( 이하 " 사업 " 이라 한다 ) 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지구내외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수익자부담금 ( 이하 " 부담금 " 이라 한다 ) 을 부과징수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부과총액 ) 부담금의 부과총액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공사비, 보상금,

가채이자 및 사무비의 총액에서 아래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부과총액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제 38 조에 정한 기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1. 보조금
- 2. 잡수입
- 3. 체비지 매각대금

제 3 조 ( 부담금부과기준 ) ① 부담금은 구획정리사업인가전과 환지처분 당시의 토지평가액의 증차액 또는 환지처분면적의 비례에 의하여 부과한다.

② 토지평가액은 한국감정원의 감정공인감정사 또는 토지평가사의 평가 및 현지매매실적을 표준으로하여 동적선방법에 의하여 산출하되, 환지처분시에는 노선가산율 방법에 의한다.

③ 전 2 항의 규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지로서 공용 또는 공공의用に 공하는것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4 조 ( 부담금감면 ) 다음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담금을 감면할수있다

- 1. 토지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에 상당한 토지를 제공할때

2. 구획정리를 위하여 노동 또는  
물건을 제공할때  
3. 지방세법제 184 조의 규정에 해당할때  
제 5 조 (납입방법) 부담금의 부과시기,  
납입기간, 납입방법, 납입장소는 시장  
이 정하는바에 의한다.  
제 6 조 (부담금채납처분) 부담금을 납입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할때에는 국  
세 및 지방세 채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 7 조 (결산) 구획정리로 인하여 수지  
정산액에 과부족이 있을때에는 부담  
금을 추징할 수 있다.  
제 8 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규칙  
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영동제 2 지구 (추가) 토지구획정리사업시  
행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5. 4. 5

◎ 서울특별시조례 제 939 호

서울특별시영동제 2 지구 (추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 7 조  
및 동법시행령 (이하 "령"이라 한  
다) 제 5 조의 규정의 하하여 서기 1974  
년 3월 30 일자 서울특별시에게 시행  
을 명한 서울영동제 2 지구 (추가) 토  
지구획정리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및 지구) ① 이 토지구획정리  
사업 (이하 "사업"이라 한다) 은 서울  
영동제 2 지구 (추가) 토지구획정리 사  
업이라 한다.

② 이 사업지구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대치동일부 (85,369㎡) 로 한다.

제 3 조 (사업비) ①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충당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를 법제 75 조 및  
영제 38 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  
부담금으로 부과 징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부담금  
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따로 조례

로 정한다.

제 4 조 (중전토지) 환지교부 또는 환지예정지 지점의 표준이 될 중전토지의 각필의 면적은, 법제 32 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일 면적의 토지대상 및 입약대상면적에 의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 (이하 "시장" 이라한다) 이 필요하여 별도로 실측기타 방법에 의하여 면적을 정한것은 그 면적에 의한다.

제 5 조 (토지의가액평가) ① 사업시행전 또는 시행후의 토지자원의 가액평가 는 한국감정원의감정, 공인감정사 또는 토지평가사의 평가 및 그토지의 위치, 형상, 면적, 고저, 교통, 환경등을 참작하여 시장이 이를 결정한다

② 사업시행후 공공 또는 공용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평가가액을 부하지 아니한다.

제 6 조 (토지사용) 시장은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할때에는 지구내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제 7 조 (토지의관리) 시장이 환지에정지들 지정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을때에는 토지소유자는 환지에정지들 유지

관리하여야하며, 관리소홀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8 조 (증명및분할) ① 사업기간중 환지에 대한 증명서 및 기타 제증명서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② 중전토지 및 환지의 변경 및 분할은 공공계획에 의한것외에는 소유자신청에 의하여 분할 또는 변경한다.

제 9 조 (환지계획의 기준) ① 이 지구의 환지계획은 가산면적 수의에 의하고 법제 48 조 내지 제 51 조 및 제 53 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로서 교부할 면적은 권리면적을 표준으로 하여 중전토지 또는 그위치 근처에 지정함을 원칙으로하며, 제 3항내지 제 6항에 규정한것을 제외하고는 중전의 토지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공공용지 및 체비지 지정으로 인하여 원위치근처에 지정할수 없을때는 전항규정에 의한 위치와 대등하다고 인정되는 위치로 비환지 지정할수 있다.

④법제 32 조에 의한 인가일에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인정하는 건물 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제 1항의 표준에 의하지 않을수도 있다.

④정리후 공용 또는 공공의用に 공하는 체비지는 제 1항의 규정에 구애함이 없이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⑤실시계획 공고일 현재 토지수용법의 제 1조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 기타 시설물에 대하여는 제 1항 규정에 불구하고 중환지 또는 감보하지 아니할수도 있다.

다만, 사유토지에 대하여는 권리면적 보다 중환지된 면적은 제 5 조에 의거 정리후 평정가격에 의하여 금전으로 징수한다.

⑥지방세법 제 7 조 1 항에 규정한 공익에 기여되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교부된 환지면적이 협소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수 없어 사업계획 공고기간내에 중환지 신고가 있을때는 특별히 중환지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경우 중환지 면적에 대하여는 전항에 의하여 이를 금전으로

징수한다.

⑦기존건물로서 전면도로가 사유도로 인 경우에는 가산 및 연도부담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존 전면도로가 확장되었을 때에는 확장된 경계목원의 연도부담으로서 부담한다.

⑧기존건물로서 주된 출입구 이외의 면에 신설도로가 책정되어 건물구조를 대변경하지 아니하는한 수익을 다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연도부담은 1/2로 감한다.

⑨공통부담은 종전의 토지를 형상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차등을 두어 부담할 수 있다.

- 가. 1급지 : 공부상대 또는 기존건물이 점유한 토지
- 나. 2급지 : 공부상 전인토지
- 다. 3급지 : 공부상 담, 임, 잡종지 및 기타토지

제 10 조 (특별지의 환지계획) ①종전토지의 지적 또는 평정가격이 근소하여 종전지적이 65% 미달되는 토지는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수 있으나 사업상 또는 점상에 따라 현저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는 환지교부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로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90㎡ 미만으로 환지할수 있다.

②현개 기존시설물이 있을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 1항의 금전청산에 의한 처분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 11 조 (사유지에 대한 환지불교부)

①사도 기타 공공의 용에 사실상 공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하여 이사업으로 인하여 이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할수 있을때에는 이사업시행인가 당시의 평가가액으로 청산(보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은 환지처분과동시에 법제 52 조의 규정에따라 하여야 한다.

제 12 조 ( 환지에정지지정 )

법제 56 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에정지를 지정하였을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입차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한때에도 또한 같다.

제 13 조 (가환지에정지지정 )

기존건물 및 공작물 이전등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때에는 관조의 환지에정지 지정에 앞서 가환지를 지정할수 있다

제 14 조 (청산) 환지에정지가 지정된때

에는 환지증감분에 대한가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할 수 있으며 환지처분공고가 있으면 즉시 이를 청산하여야 한다.

제 15 조 (청산기준) ①환지처분에 의

하여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금액은 환지로 교부할 권리면적과 환지면적과의 차이에 환지의 평정가격을 승한 금액으로 하며 분할 징수하거나 분할 교부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산금을 분할 징수 또는 분할교부할 때에는 년 22%의 이자를 가산한다.

제 16 조 (환지처분) ①환지처분은 공

사가 완료된후에 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사업시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환지계획 구역의 전부에 대하여 공사가완료되기전에 환지처분을 할수도 있다.

②환지처분을 할때에는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또는 입차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 17 조 (채비지의 책정 및 관리처분) 사업경비에 충당될 채비지는 시가지 형성의 촉진과 공공시설물의 유지를 위하여 질증적으로 책정할수 있으며 이를 관리처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18 조 (등기 완료후의 통지) 시장은 토지구획정리의 등기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환지설명서의 초본, 지가배부가 종료되었을때는 지가배부서의 초본을 첨부하여 토지소유권자 및 임차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9 조 (대리인신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시내에 거주하지 아니할때에 시내에 거주하는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시장에게 신고할수 있다. 대리인을 변경할때도 또한 같다.

제 20 조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 명의변경)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가 변경된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제 21 조 (토지소유자의 자비시공) ①법 제 39 조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자비로 공사를 시공하고자 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업시행계획에 맞추어

시행하도록 허가할수 있다.

②전항의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공동부담을 1급지(대지)로 적용할수 있다.

제 22 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조례는 공포한날로 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물언은 서울특별시 공무원지무발명보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5. 4. 7

◎서울특별시조례제 940호

서울특별시공무원지무발명보상조례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특허법제 17 조 및 제 18 조의 규정에 위거 서울특별시에 소속하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한다)의 지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



영하여 국가와 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각호와 같다.

1. "지무발명" 이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것이 상급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된 행위가 공무원의 임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자유발명" 이라 함은 전호의 규정에서의 발명 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 라 함은 지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 3 조 (권리의시승계) ①시는 발명자가 한 지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국가와 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할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②발명자가 한 자유발명이 제 3 조와 공동으로 한것인 경우에는 시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 4 조 (발명자에 대한보상) 시는 제 3 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물 승계한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5 조 (보상금의판정) 제 4 조의 규정에서의 보상금 지급에 관한사항은 시장이 이를 권장한다.

제 6 조 (발명의신고)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업무와 관련된 발명유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내용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7 조 (가승계의결정) ①제 6 조 및 제 10 조제 2 항의 규정에서의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발명이 지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수 있는 권리물 승계 (이하 "가승계" 라 한다) 할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 1 항의규정에 의한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8 조 (권리의양도) 발명자는 시장으로부터 지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제 9 조 (출원) ① 제 8 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불 양도받은 시장은 지체없이 특허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은 시장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0 조 (발명자의 특허출원) ① 발명자는 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승재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당해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 6 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 11 조 (심의요청) ① 시장은 제 9 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이 등록사정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 23 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보상 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체없이 심의요청하여야 한다.

1. 직무발명의 서울특별시 승계결정에 대한 심의

2. 제 1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등록보상금의 심의

② 시장이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12 조 (특허권의 등록) ① 직무발명으로서 시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 56 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서울특별시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시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 13 조 (특허등록등의 통지) 시장은 제 12 조의 특허등록을 마친후 시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4 조 (등록보상금의 지급) 시장은 제 1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제 15 조 (등록보상금) 시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그 발명의 우수성 및 실용가치등을 참작하여 권리 매 1권마다 다음 각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1. 특허권은 10 만원이상 100 만원 이하
- 2. 실용신안권은 5 만원이상 10 만 원 이하
- 3. 의장권은 1 만원이상 5 만원 이하

제 16 조 (특허권의 처분보상금) 제 12 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을 양도, 실시, 허여 또는 기타처분을 한 때에는 그 특허권의 내용 및 수입금등을 참작하여 발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1. 특허권의 실시를 유상으로 하여 한 때에는 그 실시로 수입금의

20%이상 30%이하에 해당하는 액

2. 특허권을 유상으로 양도한 때에는 그 대금의 20%이상 30% 이하에 해당하는 액

3. 직무발명을 시가 스스로 실시하거나 또는 제 3자에게 무상으로 실시할 허여한 때에는 제 1호의 규정에 준하는 금액

제 17 조 (특허권의 처분보고) 시장은 제 12 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을 양도, 실시, 허여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내용 및 수입금등을 특허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8 조 (처분보상금의 지급심의 요청) 시장은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 16 조에서 정하는 특허권 처분보상금의 지급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 19 조 (처분보상금의 지급) 시장은 제 18 조의 요청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결정된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제 20 조 (보상금의 지분지급) 제 15 조 및 제 16 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제 21 조 (퇴직 및 사망후의 보상)

(1)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제 15 조 또는 제 16 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액을 지급한다. 다만, 직무발명과 동일성이 있는 직무로 전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 22 조 (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가 모인(醫認)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3 조 (위원회의 설치)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직무발명보상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24 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제 1부시장, 부위원장은 내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관리관, 재무국장, 보건사회국장, 환경국장, 산업국장, 녹지국장, 도시계획국장, 주택국장, 관광운수국장, 건설국장, 수도국장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

제 25 조 (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기획관리관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26 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 11 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의 서울특별시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2. 제 30 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발명의 서울특별시 승계결정에 관한

<p>사항</p> <p>3. 제 15 조 및 제 16 조의 규정한 지급보상금 결정에 관한 사항</p> <p>4.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p> <p>5. 기타 필요한 사항</p> <p>제 27 조 (위원회의 의사등) ①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②회의는 재적위원 (위원장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의장은 표결결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p> <p>제 28 조 (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 인을 둔다.</p> <p>②간사는 행정과장이 된다.</p> <p>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 안건을 정리하고 그 서무를 처리한다.</p> <p>제 29 조 (운영의 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p> <p>제 30 조 (자유발명의 승계) ①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 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p>	<p>서울특별시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p> <p>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제 15 조 내지 제 22 조를,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 16 조 내지 제 22 조를 각각 준용한다.</p> <p>제 31 조 (발명자의 의무) 발명자는 그가 한 직무발명의 처분 또는 실시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또는 허여를 받은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p> <p>제 32 조 (비밀보지)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p> <p>제 33 조 (직무발명상황보고) 서울특별시장은 직무발명에 관한 승계업무 및 그 내용 기타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상공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 34 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p>
---	--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규 칙

서울특별시 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인

1975년 4월 7일

◎ 서울특별시규칙제 1459 호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시행규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공무원직무발명 보상조례 ( 이하 " 조례 " 라 한다 )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발명의 신고 ) ( 1 ) 조례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발명의 신고는 공무원이 현재 또는 과거 3년 이내에 그가 맡은 업무와 관련되어 이룩한 발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업무와 관련된 발명신고서

2. 발명의 성질설명서

3. 발명명세서

( 2 ) 제 1 호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신고서는 별지 제 1 호 서식에 의한다.

( 3 ) 발명의 성질설명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소속기관의 업무

발명당시 그가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업무범위를 기술하되 특히 당해 발명과 관련되는 조사, 연구 시험등의 가능유무를 기술한다.

2. 발명자 ( 공무원 ) 의 임무

발명당시 그가 소속하고 있는 기관에서 당해 발명자가 맡고 있는 직무 및 업무를 기술한다.

3. 발명의 성질

가. 소속기관의 업무에 속하는가의 여부

당해발명이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가의 여부 및 그 사유를 당해 발명과 업무범위를 연관지어 기술한다.

4. 직무발명여부

전 각호를 종합한 결과 당해 발명이 소속기관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된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임무에 속한다고 판단된 때에는 「직무발명」이라 기술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 때에는 「자유발명」이라고 기술한다.

5. 발명의 실용성

당해 발명의 실용가치, 이용가능도, 산업기여도등을 편제 또는 장래를 전망하여 발명자가 피악한 범위내에서 기술한다.

6. 발명승계에 관한 의견

당해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때 그 발명을 소속기관에서 승계할 것을 요망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그 의견을 기술한다.

7. 서명날인

발명자가 서명날인한다.

④ 제 1 항제 3 조의 규정에 의한 발명 명세서에는 특허법시행규칙 제 39 조 및 제 40 조에서 정하는 사항에 준하여 작성한다.

제 3 조 ( 신고전출원 ) ① 조 제 10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는 조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절차를 적용한다. 다만, 그 신고에는 조 제 10 조제 1 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병기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 제 7 조 내지 제 9 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준용한다.

제 4 조 ( 심의요청 ) ① 조 제 11 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요청한 때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심의 요청서
2. 발명명세서
3. 의견서
4. 특허증사본

② 전항제 1 호의 심의요청서는 별지 제 2 호서식에 의한다.

③ 발명명세서에는 특허증을 기준으로 하여 그 내용을 알기 쉽게 기술한다.

④ 제 1 항제 3 호의 발명심의요청서 의견서에는 다음사항을 기재한다.

1. 발명의 성질

직무발명 또는 자유발명에 해당하는 사유를 기술한다.

2. 발명의 실용성

발명실용가치, 이용최산업기여도 등을 현재 또는 장래를 전망하여 기술한다.

3. 등록보상금

지급할 등록보상금액 및 그 사유를 기술한다.

4. 기타

참고사항을 기술한다.

제 5조 (특허등록통지) ① 조례 제 13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등록통지 및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통지는 별지 제 3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중 특허국장에게 보고할 때는 등록보상금의 지급을 발원자의 제직, 진직 또는 퇴직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6조 (년동사항의 보고) ① 조례 제 15조 및 제 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은자 및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이를 즉시 특허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조례 제 7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후 당해인의 신상등의 변경사항

2. 조례 제 2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제 7조 (자유발명의 양도신청) ① 조례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유발명 또는 이로 인한 특허권을 시에 양도하고자 하는자는 시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유발명 (특허권) 양도신청서

2. 발명명세서

3. 특허증사본 (특허권인 경우)

② 전항 제 1호의 양도신청서는 별지 제 4호 서식에 의한다.

③ 제 1항 제 2호의 발명명세서에는 제 2조 제 4항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당해 발명의 실용성을 기술한다.

④ 업무와 관련된 자유발명을 시에 양도한다는 신청은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서 이를 가름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제 1 호서식>

업무와 관련된 발명 신고서

발 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문)		생년월일	
명	본 적			
	주 소			
자 소 속	현	계	직위또는	현
	발 명 당 시	지	급	발명당시
발 명 사 항	발명의종별	특허, 실용신안, 의장	발명 의	직무발명
	발명의명칭		성 질	자유발명

서울특별시 공무원직무발명 보상조례 제 6 조 및 동시비규칙 제 2 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신고년월일 19 . . . .

신 고 인 ㉞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 발명명세서 1부

<별지제 2호서식>

발 명 심 의 요 청 서

발 명 자	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문)		생년월일	
	본 적				
	주 소				
	소 현 재		지 현 재		
	속	발명당시	채	발명당시	
발 명 의 종 별		특허, 실용신안, 의장			
발 명 의 명 칭					
발 명 의 성 질		지무발명, 자유발명			
<p>서울특별시 공무원지무발명보상조례 제 11 조 및 동시행규칙제 6 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명의 시승계 및 등록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요청년월일 19 . . . . .</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장 ㉞</p> <p>서울특별시 지무발명보상심의회 위원장 귀하</p>					
<p>첨부 : 1. 발명명세서 2. 의견서 3. 특허증사본</p>					

<별지제 3 호서식>

특 허 ( 고 안 ) 동 무 통 지 서

특 허 자	발 명 자	성 명	( 한글 )	주민등록번호
			( 한문 )	생 년 월 일
동 무 통 지	주 소			
	발명 의 종류		특허, 실용신안, 의장	
	발명 의 명칭			
	동 무 번 호		등록년월일	
동 무 보 상 금	지 급 받 는 자	성 명	( 한글 )	주민등록번호
			( 한문 )	생 년 월 일
	본 적			
	주 소			
	소 속	현 계	지 관 계	현 계
	속	발명당시	국	발명당시
	지급결정년월일및번호			
	지 급 결 정 액			

서울특별시 공무원 지무발명 보상규정 제 13 조 및 동시행규칙 제 5 조  
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 ( 고안 ) 등록될 및 지급결정된 동무보상금을 위  
와같이 통지함.

19 . . . . .

서울특별시장 ㉞

귀 하

첨부 : 특허 ( 고안 ) 동무부 사본

< 별지 제 4 호 서식 >

자유 발명 ( 특허권 ) 양도 신청서

발 성 명	( 한글 )	주민등록번호	
	( 한문 )	생년월일	
명	본 적		
	주 소		
자	소 현 계	지 원 계	
	속 발명당시	책 발명당시	
발표 발명의 종류	특허, 실용신안, 의장	발명의	
의시 발명의 명칭		내 용	

서울특별시 공무원직무발명 보상조례 제 30 조 및 동시행규칙 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발명 ( 특허권 ) 을 시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19 . . . . .

신청인

④

서울특별시장 귀하

- 첨부 : 1. 발명명세서 1부  
2. 특허증사본 1부

고 시

○서울특별시사료성분등록  
고시제 39 호

등록이 있었기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지한다.

1975. 3. .

다음과 같이 사료성분에 대한

서울특별시 장

사료성분등록사항

공장명	소재지	대표	사 료			사 료 성 분 량				유효 기간	
			승류	명 칭	용 도	조단백질	조지방	조섬유	조회분		
양주지구 속 산 합동조합	도봉동	양학승	배합 사료	큰병이리 전기	13-16주	13.0이상	3.0이상	7.5이하	3.0이하	1975. 3.31~	
	"	"	"	큰병이리 후기	17-초산	12.0	3.0	7.5	9.0	"	
	"	"	"	"	산란말기	36주이상	14.0	3.0	7.0	13.0	"
	"	"	"	"	부리일리 후기 2	출하 1주전 부터출하시	16.0	3.0	6.0	9.0	"
	"	"	"	"	육계종계 사료	육계 종계 사료	25.5	3.0	7.0	13.0	"
	"	"	"	"	젓 소	7-18개월	13.0	3.0	10.0	11.0	"
	"	"	"	"	큰송아지	"	14.0	3.0	10.0	11.0	"
	"	"	"	"	큰송아지	"	"	"	"	"	"
	"	"	"	"	임신전기	임신 6개월 까지	14.0	3.0	10.0	11.0	"
	"	"	"	"	고깃 소	고깃소전기	15.0	3.0	9.0	11.0	"
	"	"	"	"	고깃 소	고깃소중기	13.0	3.0	10.0	11.0	"
	"	"	"	"	고깃 소	고깃소후기	11.0	3.0	11.0	11.0	"
	"	"	"	"	종 모 우 사 료	종모우사료	12.0	3.0	10.0	11.0	"

◎서울특별시 고시 제 40 호

도시계획시설(시장)결정  
및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시장)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하였  
기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제 13조와  
건설부고시 제 123 호 (73.4.4)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출장소)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5. 4. 3.

서울특별시 장

가. 시설조서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시    장	중구남창동32-2 대의 630 필지 중구남창동31-1 대의 52 필지	24,253 ㎡	(1) 남창동 52-5 도는 도로로 시설확보 하는 조건부로 결정 (2) 남창동 4-3 대(880 ㎡)는 도시계획 재개발지구에서 저촉되므로 시장용지 결정에서 제외함.
--------	---	----------	---

※  빈  첨  :  도면표시와 같음(도면 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청과 관할구청(출장소)에 보관

◎서울특별시 고시 제 41 호

도시계획시설(시장)결정  
및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시장)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제 13조와 건설  
부고시 제 123 호 (73.4.4)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출장소)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5. 4. 3.

서울특별시 장

가. 시설조서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시 장	용산구보광동224-1, 260-8	1,637 ㎡	보광시장 후암시장 (도로계획선에 저촉건물은 철거하는 조건으로 시설결정)
	용산구후암동108 → 외5필지	742.8 ㎡	

※ 별첨 : 도면 표시와 같음. (도면 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청과 관할구청(출장소)에 보관

◎서울특별 시고시 제 43 호

도시 계획 사업 (학교)  
시행 허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 187 호 (74.12.16)로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된 도시계획사업 (학교시설)의 시행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4조 및 건설부고시 제 123 호 (73.

4.4)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도봉구청 시민봉사실 및 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관계부에서 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지 한다.  
1975. 4. 8.  
서울특별 시장

1. 사업시행자 : 도봉구중계동산 6-1  
의 9필지

2. 사업종류및명칭 : 학교시설사업

3. 사업시행자 주소성명 :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

4. 사업시행면적 : 3,336 평 (11,000 ㎡)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가. 착 수 : 1975.3.

나. 준 공 : 1976.3.31

6. 위치도및 계획면도 : (별첨)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별첨).

8.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 : (별첨)

◎ 서울특별시고시제 44 호

비료판매영업등록고시

비료단속법 시행령 제6조 제 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료판매  
영업등록을 하겠기 이를 고시한다.

1975.4.8.

서울특별시장

등록번호	등록 또는 교부 년월일	판매지주소성명및판매장소재지	비료의 명칭	보증성분량	기타규격
1-4	등록 1975.4.8.	1. 주소 성명 서울종로구충신동 189 의 1 이 춘 섭 2. 판매장소 서울종로구종로 5가 46 홍농중묘주식회사	제5종복합비료 (액체비료) (일명, 비왕)	농수산부고시 제 2518호에 의한 공정규격	

1. 유효기간: 1975.4.8 ~ 1977.4.7

2. 등록일로부터 2년이내에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제 75 호

도시계획사업(학교종합시설)완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 155호(73.9.25)로  
시행허가된 도시계획(학교시설)사업이 완료  
되었기 도시계획법 제85조 제1항 및 동법

제 46조 제 3 항의 규정과 전설부고시제 123  
호(73.4.4)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 관제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  
계획과 및 도봉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5.4.2.

서울특별시장

1. 사업 집행지 : 서울특별시도봉구쌍문동  
363의2 의 3 필지  
2. 사 업 명 : 도시계획사업(학교종합  
시설)

3. 사업시행면적 : 3,733 평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  
5. 사업기간 : 73.9.25-74.8.31  
6. 준공도면 : 준공도면 생략



○ 서울특별시공고제 76 호

환지에정지변경지정공고

1. 서울특별시 창동, 경인, 역촌, 망우토지구회정리사업지구내 일부 토지에 대하여 환지계획을 변경 서울특별시공고 제 16 호 (75.1.30)로 공람 공고한바 있는 일부토지에 대하여 환지에정지 지정을 별첨조서 및 도면과 같이 변경하였기 토지구회정리사업법 제 47 조 및 제 56 조와 해당지구 토지구회정리사업시행조례 제 1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
2. 환지에정지가 변경지정된 토지의 사용수익은 공고일로부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부여한다. 다만, 정지공사미완료 또는 다른사유로 인하여 환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는 토지는 공사완료 및 다른사유가 해소되는 날로부터 사용수익을 하게된다.
3. 환지에정지 변경지정서 및 변경도면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구회정리 1 과와 관할구청 및 관할출장소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

이게 하며 토지소유자에게는 별도 송달될 것이나 미수령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

첨부: 환지에정지 변경지정서 및 변경도면, 조서별첨, 도면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구회정리 1 과 및 관할구청과 출장소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

1975. 4. 2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공고제 79 호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실시계획공람공고

1. 건설부고시 289 호 (74.8.26)로 고시된 산업대학 진입로확장공사 구간내에 저촉되는 토지의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제 34 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설행정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외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5. 4. 8

서울특별시장

공 략 개 요

- 1. 사업의 시행위치 : 동대문구 건동동
- 2. 사업의 종류및명칭 : 산업대학진  
입트화장공사
- 3. 사업의 규모 : B = 15 m  
L = 122 m
-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 5. 사용착수 및 준공예정 :  
75. 2. 3 ~ 75. 5.30
-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별첨  
토지조서
-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제 3 항의 관  
제인 주소 . 성명 : 별첨토지조서

사 령
-----

◎ 1975. 3.27

마 포 구 지방행정 서기보 정연호  
경상북도영천군전출음 명함.

◎ 1975. 4. 1

구획정리 2과 지방토목 정영호  
(환지계장) 기 사 보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예산담당관실 서기관 김점창  
(담당관)  
75.4.1 ~ 4.10까지 해외  
기술훈련규정에 의한 해외

출장(홍콩)을 명함.  
예산담당관 지방행정 김종도  
실(담당관) 주 서 사  
75.4.1-4.10까지 해외기  
술훈련규정에 의한 해외출  
장(홍콩)을 명함.

◎ 1975. 4. 2

영등포구(건 지방건축 조규찬  
축과장사무대리) 기 사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 1975. 4. 3

공무원교육원 행정주사 박용창  
공무원교육원 교수부 교학  
과 교무계장 직무대리를  
명함.

산업국장 부이사관 노이식  
이사관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성북구청 서기관 국응호  
부이사관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서울특별시성북구청장에게 보함.

◎ 1975. 4. 5

마 포 구 지방토목 정진화  
기 사 보  
지방토목기사에 추서함.

◎ 1975. 4. 7

<p>위생연구소 지방보건 연구소보 임 봉 백</p> <p>75.4.7-76.3.20 까지 해외 기술훈련유정에 의한 해외출 장(일본)을 명함.</p>	<p>황 선 희</p> <p>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성동구보건소근무를 명함.</p>
<p>도봉구보건소 지방보건 기사보 이 계 구</p> <p>서울특별시소청심사위원회결정 에 따라 74.11.26 (발령제 966 호) 감봉 6 월처분을 등 일자로 감봉 3 월에 처함.</p>	<p>윤 명 남</p> <p>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정신병원근무를 명함.</p>
<p>강로구보건소 지방보건 기원보 고 동 옥</p> <p>서울특별시소청심사위원회결정 에 따라 74.11.26 (발령제 966 호) 감봉 1 월처분을 등 일자로 전책에 처함.</p>	<p>박 미 자</p> <p>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중부병원근무를 명함.</p>
<p>동대문구 지방보건 보건소 기원보 박 원 중</p> <p>서울특별시소청심사위원회결정 에 따라 74.11.26 (발령제 966 호) 감봉 1 월처분을 등 일자로 전책에 처함.</p>	<p>제 순 자</p> <p>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아동병원근무를 명함.</p>
<p>○ 1975. 4.10</p> <p>리 경</p> <p>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동대문구보건소근무를 명함.</p>	<p>장 해 영</p> <p>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가동병원근무를 명함.</p> <p>김 영 옥</p> <p>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서대문병원근무를 명함.</p>

<p>박 경 회</p> <p>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p> <p>1 호봉을 급함.</p> <p>아동병원근무를 명함.</p>	<p>서대문구보건의소근무를 명함.</p> <p>성북구보건의소 지방간호사 최 영 자</p> <p>영등포구보건의소근무를 명함.</p> <p>서대문구 지방간호사 김 원 배</p>
<p>도 영 회</p> <p>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p> <p>1 호봉을 급함.</p> <p>영등포병원근무를 명함.</p>	<p>성북구보건의소근무를 명함.</p> <p>영등포구 지방간호사 우 매 순</p> <p>서대문병원근무를 명함.</p> <p>서대문병원 지방간호사 김 은 란</p>
<p>김 명 숙</p> <p>지방약무기원보시보에 임함.</p> <p>1 호봉을 급함.</p> <p>남구병원근무를 명함.</p>	<p>성동구보건의소근무를 명함.</p> <p>서대문구 지방간호원 최 인 숙</p> <p>관악구보건의소근무를 명함.</p> <p>영등포구 지방간호보 김 숙 경</p>
<p>조 순 임</p> <p>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p> <p>1 호봉을 급함.</p> <p>남부병원근무를 명함.</p>	<p>관악구보건의소근무를 명함.</p> <p>영등포구 지방보건원 박 형 남</p> <p>관악구보건의소근무를 명함.</p> <p>영등포구 지방건축기사보 이 영 필</p>
<p>김 치 운</p> <p>경북건설국 지방행정 치수과 사무관</p> <p>서울특별시전입을 명함.</p> <p>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p> <p>7 호봉을 급함.</p>	<p>용산구근무를 명함.</p> <p>용 산 구 지방건축기사보 한 무 길</p> <p>영등포구근무를 명함.</p> <p>영등포구 지방건축기사보 이 무 부</p>
<p>반 상 균</p> <p>문화공보실공보제장에 포함.</p> <p>문화공보실 공보제장</p> <p>독지과임정제장에 포함.</p> <p>성동구보건의소 지방간호사 김 순 임</p>	<p>마포구근무를 명함.</p> <p>마 포 구 지방건축기사보 한 대 인</p> <p>영등포구근무를 명함.</p> <p>양서출장소 지방건축기사보 신 명 기</p>

중로구군무를 명함.		영등포구 지방건축 기원	류기태
중로구 지방건축 기사보	정희중	중구군무를 명함.	
양서출장소군무를 명함.		중구 지방건축 기원	최선규
양서출장소 지방건축 기사보	이지환	영등포구군무를 명함.	
용산구군무를 명함.		영등포구 지방건축 기원보	이준환
용산구 지방건축 기사보	김규태	마포구군무를 명함.	
양서출장소군무를 명함.		마포구 지방건축 기원보	이수정
마포구 지방건축 기원	배서중	영등포구군무를 명함.	
중구군무를 명함.		양서출장소 지방건축 기원보	이원용
영등포구 지방건축 기원	박태문	중로구군무를 명함.	
용산구군무를 명함.		중로구 지방건축 기원보	김기수
중로구 지방건축 기원	김성연	양서출장소군무를 명함.	
영등포군무를 명함.		양서출장소 지방건축 기원보	남동송
영등포구 지방건축 기원	김병현	중로구군무를 명함.	
마포구군무를 명함.		용산구 지방건축 기원보	강해준
마포구 지방건축 기원	유영근	양서출장소군무를 명함.	
영등포구군무를 명함.			

시 울 록 별 시 장